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추가〉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50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1
IV.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도걸 · 정준호 · 임호선 · 전용기 · 이용선 · 정태호

조계원 · 복기왕 · 정진욱 · 최혁진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12. 23.

3) 회 부 일 : 2025. 12. 24.

※ 의안번호 : 1555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략)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u>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u> (이하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한국방송공사 사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u> ----- ----- ----- ----- ----- ----- -----

현행	개정안
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 -----. ④ (현행과 같음)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8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5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5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 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국가정 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 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 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미디 어통신심의위원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해 2026년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하였으며, 동 기관은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됨.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주요 직무는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임.

[표-3]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직무 및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목적	◦ 전략적투자(「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 지원
직무	◦ 위탁자산의 관리·운용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 한미전략투자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정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
임원구성	◦ 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 - 사장: 임기 3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이사: 임기 2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 - 감사: 임기 2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위 연임 가능

자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상 조문 발췌

개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로서¹⁾ 우리나라 경제와 한미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사장 후보자의 자질, 전문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할지는 해당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9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직위의 위상·임무·권한과 영향력, 국회에서의 검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직후 동 개정안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548호)」이 발의되었는데, 해당 법률안에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음.²⁾

그러나 대미투자특별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 법률안과 관련된 총 9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³⁾

따라서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⁴⁾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근거를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외에 개별법에도 두어야 함을 고려할 때,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추가하는 경우 개별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 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제23조(사장의 임명)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임원의 임면) ①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4)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문 의 처
02)6788-5015



도입 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지명)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지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
제22대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5. 10. 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